구분	세번	품명	수 출 요 령	관련법령	비고
	010121	번식용의 것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12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129	기타	3.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130	당나귀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190	기타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221	소(번식용의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한우	축산법	
	010221	소(번식용의 것)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축산법	
	010221	소(번식용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221	소(번식용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229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231	번식용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239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290	기타(번식용의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한우	축산법	
	010290	기타(번식용의 것)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축산법	
	010290	기타(번식용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310	돼지(번식용의 것)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310	돼지(번식용의 것)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310	돼지(번식용의 것)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391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의 것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391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의 것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391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의 것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392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의 것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392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의 것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392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의 것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410	면양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420	염소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420	염소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420	염소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11	닭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13	오리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14	거위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15	기니아새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94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99	기타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	기타의 산 동물	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의한 체장 또는 체중 이하인 품목은 수출할 수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0106	기타의 산 동물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포유류 ② 조류 ③ 파충류 ④ 양서류 ⑤ 판새어류 ⑥ 어류 ⑦ 폐어류 ⑧ 해삼류 ⑨ 거미류 ⑩ 곤충류 ⑪ 거머리류 ⑫ 이매패류 ⑬ 복족류 ⑭ 산호류 ⑮ 히드라충류 ⑯ 식물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	기타의 산 동물	3.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	기타의 산 동물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 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	기타의 산 동물	5.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	기타의 산 동물	6.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1	영장류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2	고래·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4	토끼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2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1. 통합공고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106201000	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202000	자 라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203000	거북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20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31	맹금류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32	앵무류(패로트류,파라키트류,금강앵무류,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39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41	벌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49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90	기타	1. 통합공고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106901000	양서류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90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110	도체와 이분도체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110	도체와 이분도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120	갈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12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1201000	양서류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120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130	뼈 없는 것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1300000	뼈없는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210	도체와 이분도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2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220	갈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22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2201000	갈비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220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230	뼈 없는 것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2300000	뼈없는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311	도체와 이분도체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311	도체와 이분도체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11	도체와 이분도체	3.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11	도체와 이분도체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3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3.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19	기타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319	기타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19	기타	3.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19	기타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21	도체와 이분도체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321	도체와 이분도체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21	도체와 이분도체	3.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21	도체와 이분도체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2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32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2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3.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2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29	기타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329	기타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29	기타	3.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29	기타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50	염소의 고기	1.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50	염소의 고기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50	염소의 고기	3.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50	염소의 고기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30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630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30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3.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30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41	간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641	간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41	간	3.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41	간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49	기타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649	기타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49	기타	3.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49	기타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8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8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8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90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90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90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1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1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13	절단육과 설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14	절단육과 설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24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25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26	절단육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27	절단육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41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1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42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2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43	지방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3	지방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44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4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45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5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51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1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52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2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53	지방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54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4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55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5	절단육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60	기니아새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810	토끼의 것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10	토끼의 것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10	토끼의 것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40	고래・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5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1. 통합공고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20890	기타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90	기타	1. 통합공고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20890	기타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90	기타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910	돼지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910	돼지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9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11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11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11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12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12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12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19	기타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19	기타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19	기타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	기타(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을 포함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	기타(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을 포함한다)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	기타(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을 포함한다)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2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3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21099	기타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30111	민물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11	민물의 것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3011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91	송어(살모 트루타·앙코링쿠스 미키스·앙코링쿠스 클라키·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앙코링쿠스 길래·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의한 체장 이하인 품종은 수출할 수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030192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1.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1월1일~6월30일 : 1마리당 체중 100g이하 ② 7월1일~12월31일 : 1마리당 체중 4g이상부터 100g이하	수산자원관리법
	030192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2. 제1항 이외의 것은 양만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수산업법
	030194	대서양 참다랑어 및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터너스 오리엔탈리스)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깝베르데, 상토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하는 것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하는 것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하는 것	ICCAT협약
	030195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남방참다랑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CCSBT협약
	030199	기타	1.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방어 체장 20㎝ 이하 ② 능성어 체장 10㎝ 이하 ③ 볼락 체장 15㎝ 이하 ④ 농어 체장 20㎝ 이하 ⑤ 쥐노래미 체장 20㎝ 이하	수산자원관리법
	030199	기타	2.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의한 체장 이하인 품종은 수출할 수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030199	기타	3.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030199	기타	4.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99	기타	5.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99	기타	6.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30234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Bigeye)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눈다랑어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또는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ATTC협약
	030235	대서양 참다랑어 및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터너스 오리엔탈리스)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깝베르데, 상토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하는 것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하는 것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하는 것	ICCAT협약
	030236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로부터 추출된 어육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CCSBT협약
	030239	기타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깝베르데, 상토메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 Thunnus orientalis)의 것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ICCAT협약

	030239	기타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ICCAT협약
	030274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28	기타 어류, 다만, 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28	기타 어류, 다만, 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28	기타 어류, 다만, 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30281	곱상어와 기타 상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28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1. 이빨고기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별지 제4,5호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CCAMLR협약
	030289	기타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ICCAT협약
	030289	기타	이빨고기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별지 제4,5호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CCAMLR협약
	03028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291	간・어란(魚卵)・어백(魚白)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291	간・어란(魚卵)・어백(魚白)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30326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34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깝베르데, 상토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하는 것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하는 것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하는 것 ④ IOTC회원국(일본, EU, 호주, 중국, 코모로스, 에리트리아, 인도, 오만,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세이셸, 태국,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수단, 수리랑카, 마다카스카르, 기니, 이란, 케냐, 필리핀, 바누아투)으로 수출하는 것 ⑤협력국(인도네시아, 남아공)으로 수출하는 것	ICCAT협약 IOTC협약
	03034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2.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Bigeye)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눈다랑어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또는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ATTC협약

	030345	대서양 참다랑어 및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터너스 오리엔탈리스)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 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깝베르데, 상토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하는 것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하는 것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하는 것	ICCAT협약
	030346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로부터 추출된 어육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CCSBT협약
	030349	기타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 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깝베르데, 상토메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의 것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ICCAT협약
	030357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ICCAT협약
	03038	그 밖의 어류.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1. 삭제(2001-83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03038	그 밖의 어류.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03038	그 밖의 어류.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5.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30381	곱상어와 기타 상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38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이빨고기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별지 제4,5호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CCAMLR협약
	030389	기타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ICCAT협약
	030389	기타	이빨고기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별지 제4,5호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CCAMLR협약
	03038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39	간·어란(魚卵)·어백(魚白)·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03039	간·어란(魚卵)·어백(魚白)·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45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45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③의 것은 별지 제2,3호 서식, ④의 것은 별지 제4,5호 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깝베르데, 상토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하는 참다랑어의 것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의 것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의 것 ④ IOTC회원국(일본, EU, 호주, 중국, 코모로스, 에리트리아, 인도, 오만,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세이셸, 태국,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수단, 수리랑카, 마다카스카르, 기니, 이란, 케냐, 필리핀, 바누아투)으로 수출되는 눈다랑어(Thunnus obesus)의 것 ⑤ 협력국(인도네시아, 남아공)으로 수출되는 눈다랑어(Thunnus obesus)의 것 ⑥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로부터 추출된 어육의 것 ⑦ 이빨고기의 것	ICCAT협약 IOTC협약 CCSBT협약 CCAMLR협약
	030445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ICCAT협약
	030445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30445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4.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Bigeye)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눈다랑어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또는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ATTC협약
	030446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②의 것은 별지 제2,3호 서식, ③의 것은 별지 제4,5호 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깝베르데, 상토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하는 참다랑어의 것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④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로부터 추출된 어육의 것 ⑤ 이빨고기류의 것	ICCAT협약 CCSBT협약 CCAMLR협약
	030446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ICCAT협약

	030446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Bigeye)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눈다랑어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또는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ATTC협약
	030449	기타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②의 것은 별지 제2,3호 서식, ③의 것은 별지 제4,5호 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깝베르데, 상토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하는 참다랑어의 것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④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로부터 추출된 어육의 것 ⑤ 이빨고기류의 것	ICCAT협약 CCSBT협약 CCAMLR협약
	030449	기타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ICCAT협약
	030449	기타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Bigeye)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눈다랑어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또는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ATTC협약
	03045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②의 것은 별지 제2,3호 서식, ③의 것은 별지 제4,5호 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깝베르데, 상토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하는 참다랑어의 것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 Thunnus orientalis)의 것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 Thunnus orientalis)의 것 ④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로부터 추출된 어육의 것 ⑤ 이빨고기류의 것	ICCAT협약 CCSBT협약 CCAMLR협약
	03045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ICCAT협약
	03045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Bigeye)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눈다랑어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또는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ATTC협약

	03045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속)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②의 것은 별지 제2,3호 서식, ③의 것은 별지 제4,5호 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 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깝베르데, 상토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하는 참다랑어의 것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 Thunnus orientalis)의 것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④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로부터 추출된 어육의 것 ⑤ 이빨고기류의 것	ICCAT협약 CCSBT협약 CCAMLR협약
	03045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속)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ICCAT협약
	03045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속)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Bigeye)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눈다랑어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또는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ATTC협약
	030459	기타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②의 것은 별지 제2,3호 서식, ③의 것은 별지 제4,5호 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 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깝베르데, 상토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하는 참다랑어의 것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 Thunnus orientalis)의 것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④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로부터 추출된 어육의 것 ⑤ 이빨고기류의 것	ICCAT협약 CCSBT협약 CCAMLR협약
	030459	기타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ICCAT협약
	030459	기타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Bigeye)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눈다랑어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또는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ATTC협약
	03045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62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63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6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72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7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81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 ·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앙코링쿠스 게타 · 앙코링쿠스 챠비챠 · 앙코링쿠스 키수츠 ·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82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83	넙치류(플루로넥티대과 · 바디대과 · 사이노글로시대과 · 솔레이대과 · 스코프탈미대과 및 시타리대과)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8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③의 것은 별지 제2,3호 서식, ④의 것은 별지 제4,5호 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캄베르데, 상토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하는 참다랑어의 것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④ IOTC회원국(일본, EU, 호주, 중국, 코모로스, 에리트리아, 인도, 오만,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세이셸, 태국,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수단, 수리랑카, 마다카스카르, 기니, 이란, 케냐, 필리핀, 바누아투)으로 수출되는 눈다랑어(Thunnus obesus)의 것 ⑤ 협력국(인도네시아, 남아공)으로 수출되는 눈다랑어(Thunnus obesus)의 것 ⑥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로부터 추출된 어육의 것 ⑦ 이빨고기의 것	ICCAT협약 IOTC협약 CCSBT협약 CCAMLR협약
	03048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ICCAT협약
	03048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Bigeye)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눈다랑어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또는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ATTC협약

	03048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③의 것은 별지 제2,3호 서식, ④의 것은 별지 제4,5호 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 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깜베르데, 상토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하는 참다랑어의 것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④ IOTC회원국(일본, EU, 호주, 중국, 코모로스, 에리트리아, 인도, 오만,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세이셸, 태국,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수단, 수리랑카, 마다카스카르, 기니, 이란, 케냐, 필리핀, 바누아투)으로 수출되는 눈다랑어(Thunnus obesus)의 것 ⑤ 협력국(인도네시아, 남아공)으로 수출되는 눈다랑어(Thunnus obesus)의 것 ⑥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로부터 추출된 어육의 것 ⑦ 이빨고기의 것	ICCAT협약 IOTC협약 CCSBT협약 CCAMLR협약
	03048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ICCAT협약
	03048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Bigeye)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눈다랑어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또는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ATTC협약
	030487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89	기타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③의 것은 별지 제2,3호 서식, ④의 것은 별지 제4,5호 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 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깜베르데, 상토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하는 참다랑어의 것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④ IOTC회원국(일본, EU, 호주, 중국, 코모로스, 에리트리아, 인도, 오만,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세이셸, 태국,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수단, 수리랑카, 마다카스카르, 기니, 이란, 케냐, 필리핀, 바누아투)으로 수출되는 눈다랑어(Thunnus obesus)의 것 ⑤ 협력국(인도네시아, 남아공)으로 수출되는 눈다랑어(Thunnus obesus)의 것 ⑥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로부터 추출된 어육의 것 ⑦ 이빨고기의 것	ICCAT협약 IOTC협약 CCSBT협약 CCAMLR협약
	030489	기타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ICCAT협약

	030489	기타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Bigeye)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눈다랑어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또는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ATTC협약
	03048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9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③의 것은 별지 제2,3호 서식, ④의 것은 별지 제4,5호 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깜베르데, 상토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하는 참다랑어의 것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④ IOTC회원국(일본, EU, 호주, 중국, 코모로스, 에리트리아, 인도, 오만,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세이셸, 태국,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수단, 수리랑카, 마다카스카르, 기니, 이란, 케냐, 필리핀, 바누아투)으로 수출되는 눈다랑어(Thunnus obesus)의 것 ⑤ 협력국(인도네시아, 남아공)으로 수출되는 눈다랑어(Thunnus obesus)의 것 ⑥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로부터 추출된 어육의 것 ⑦ 이빨고기의 것	ICCAT협약 IOTC협약 CCSBT협약 CCAMLR협약
	03049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ICCAT협약
	03049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3049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4.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Bigeye)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눈다랑어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또는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ATTC협약
	030492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③의 것은 별지 제2,3호 서식, ④의 것은 별지 제4,5호 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깜베르데, 상토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하는 참다랑어의 것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④ IOTC회원국(일본, EU, 호주, 중국, 코모로스, 에리트리아, 인도, 오만,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세이셸, 태국,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수단, 수리랑카, 마다카스카르, 기니, 이란, 케냐, 필리핀, 바누아투)으로 수출되는 눈다랑어(Thunnus obesus)의 것 ⑤ 협력국(인도네시아, 남아공)으로 수출되는 눈다랑어(Thunnus obesus)의 것 ⑥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로부터 추출된 어육의 것 ⑦ 이빨고기의 것	ICCAT협약 IOTC협약 CCSBT협약 CCAMLR협약

	030492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2.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ICCAT협약
	030492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30492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4.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Bigeye)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눈다랑어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또는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ATTC협약
	03049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95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를 제외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99	기타	1.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③의 것은 별지 제2,3호 서식, ④의 것은 별지 제4,5호 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캄베르데, 상토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하는 참다랑어의 것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④ IOTC회원국(일본, EU, 호주, 중국, 코모로스, 에리트리아, 인도, 오만,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세이셀, 태국,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수단, 수리랑카, 마다카스카르, 기니, 이란, 케냐, 필리핀, 바누아투)으로 수출되는 눈다랑어(Thunnus obesus)의 것 ⑤ 협력국(인도네시아, 남아공)으로 수출되는 눈다랑어(Thunnus obesus)의 것 ⑥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로부터 추출된 어육의 것 ⑦ 이빨고기의 것	ICCAT협약 IOTC협약 CCSBT협약 CCAMLR협약
	030499	기타	2.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ICCAT협약
	030499	기타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3049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99	기타	4.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Bigeye)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 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눈다랑어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또는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ATTC협약
	030520	어류의 간과 어란(건조·훈제·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20	어류의 간과 어란(건조·훈제·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20	어류의 간과 어란(건조·훈제·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3053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32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3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49	기타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49	기타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49	기타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3055	건조한 어류,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5	건조한 어류,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59	기타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3056	건조하지도 훈제하지도 않은 염장한 어류, 염수장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6	건조하지도 훈제하지도 않은 염장한 어류, 염수장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69	기타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30571	상어 지느러미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614	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616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속·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617	그 밖의 새우류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76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77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고막 각장 2㎝ 이하	수산자원관리법
	03077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의한 체장 이하인 품종은 수출할 수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03077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030781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고막 각장 2㎝ 이하	수산자원관리법
	030781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의한 체장 이하인 품종은 수출할 수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030781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03079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1.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고막 각장 2㎝ 이하	수산자원관리법
	03079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의한 체장 이하인 품종은 수출할 수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03079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3.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03079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79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81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고막 각장 2㎝ 이하	수산자원관리법
	03081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의한 체장 이하인 품종은 수출할 수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03081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03082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고막 각장 2㎝ 이하	수산자원관리법
	03082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의한 체장 이하인 품종은 수출할 수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03082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030830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속]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고막 각장 2㎝ 이하	수산자원관리법
	030830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속]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의한 체장 이하인 품종은 수출할 수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030830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속]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030890	기타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고막 각장 2㎝ 이하	수산자원관리법
	030890	기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의한 체장 이하인 품종은 수출할 수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030890	기타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0407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7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719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719	기타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72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72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729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729	기타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7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790	기타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11	건조한 것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11	건조한 것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11	건조한 것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19	기타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19	기타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19	기타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91	건조한 것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91	건조한 것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91	건조한 것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99	기타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99	기타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99	기타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210	돼지털·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210	돼지털·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210	돼지털·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290	기타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290	기타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290	기타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504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5.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	소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50400	소시지 케이싱용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504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50400	소시지 케이싱용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504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504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50400	방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50400	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50510	솜털 및 충전재용 깃털	1.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510	솜털 및 충전재용 깃털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510	솜털 및 충전재용 깃털	3.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510	솜털 및 충전재용 깃털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590	기타	1.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590	기타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590	기타	3.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590	기타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1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1.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1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2.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5061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1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4.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90	기타	1.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90	기타	2.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50690	기타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90	기타	4.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10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1.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10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10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3.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10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90	기타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90	기타	2.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50790	기타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90	기타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8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8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000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캔대리디즈·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腺)이나 기타 동물성 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000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캔대리디즈·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腺)이나 기타 동물성 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000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캔대리디즈·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腺)이나 기타 동물성 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10	소의 정액	1. 다음의 것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한우 정액	축산법
	051110	소의 정액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축산법
	051191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1.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치어 및 치패의 수출제한 고시된 품종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051191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2. 상기 제1항 이외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051191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3.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1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4.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1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5.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51199	기타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9조에 의거 정부가 수출하는 누에씨에 대하여는 시·도잠업기관의 검사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051199	기타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051199	기타	3.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	기타	4.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51199	기타	5.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	기타	6.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	기타	7. 다음의 것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한우의 수정란	축산법
	051199	기타	8.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축산법
	051199	기타	9.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060110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10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10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60110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4. 다음의 것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내재래종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로서 수출할수 있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수산유전자원으로 종자를 포함한다.) ① 글라디올러스 ② 포인세티아 ③ 원추리 ④ 바위떡풀 ⑤ 아마릴리스 ⑥ 페튜니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60120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치커리 뿌리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20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치커리 뿌리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20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치커리 뿌리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60120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치커리 뿌리	4. 다음의 것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내재래종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로서 수출할수 있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수산유전자원으로 종자를 포함한다.) ① 강활 ② 도라지 ③ 딸기 ④ 마 ⑤ 마늘 ⑥ 복분자딸기 ⑦ 삽주 ⑧ 생강 ⑨ 작약 ⑩ 지황 ⑪ 차나무 ⑫ 하수오 ⑬ 황기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60210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10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10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60210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4. 다음의 것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내재래종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로서 수출할수 있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수산유전자원으로 종자를 포함한다.) ① 구기자나무 ② 다래 ③ 매실나무 ④ 살구나무 ⑤ 오미자 ⑥ 유자나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60220	수목 및 관목(식용의 과실 또는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20	수목 및 관목(식용의 과실 또는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20	수목 및 관목(식용의 과실 또는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60220	수목 및 관목(식용의 과실 또는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다음의 것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내재래종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로서 수출할수 있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수산유전자원으로 종자를 포함한다.) ① 사과나무 ② 배나무 ③ 머루 ④ 포도 ⑤ 감나무 ⑥ 귤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60230	철쭉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30	철쭉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30	철쭉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60290	기타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90	기타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90	기타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60290	기타	4. 다음의 것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내재래종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로서 수출할수 있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수산유전자원으로 종자를 포함한다.) ① 선인장 ② 무궁화 ③ 뽕나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60311	장미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1	장미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1	장미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60312	카네이션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2	카네이션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2	카네이션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60313	난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3	난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3	난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60314	국화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4	국화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4	국화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60315	백합[릴리움(Lilium)속]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9	기타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603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90	기타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60420	신선한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490	기타	통합공고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0191	종자	1. 다음의 것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내재래종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로서 수출할수 있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수산유전자원으로 종자를 포함한다.) ① 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0210	종자	1. 다음의 것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내재래종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로서 수출할수 있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수산유전자원으로 종자를 포함한다.) ① 호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0310	종자	2. 다음의 것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내재래종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로서 수출할수 있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수산유전자원으로 종자를 포함한다.) ① 보리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0410	종자	1. 다음의 것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내재래종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로서 수출할수 있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수산유전자원으로 종자를 포함한다.) ① 귀리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0710	종자	1. 다음의 것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내재래종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로서 수출할수 있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수산유전자원으로 종자를 포함한다.) ① 수수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0821	종자	1. 다음의 것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내재래종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로서 수출할수 있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수산유전자원으로 종자를 포함한다.) ① 메밀 ② 조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051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1. 다음의 것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내재래종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로서 수출할수 있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수산유전자원으로 종자를 포함한다.) ① 유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0740	참깨	1. 다음의 것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내재래종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로서 수출할수 있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수산유전자원으로 종자를 포함한다.) ① 참깨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0930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0991	채소 종자	1. 다음의 것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내재래종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로서 수출할수 있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수산유전자원으로 종자를 포함한다.) ① 곰취 ② 달래 ③ 부추 ④ 순무 ⑤ 여주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0999	기타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0999	기타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0999	기타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0999	기타	4. 다음의 것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내재래종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로서 수출할수 있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수산유전자원으로 종자를 포함한다.) ① 감자 ② 콩 ③ 고구마 ④ 기장 ⑤ 녹두 ⑥ 동부 ⑦ 땅콩 ⑧ 미나리 ⑨ 벼 ⑩ 팥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120	인삼	1. 다음의 것은 자체검사업체 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①백삼 ②홍삼 ③태극삼 ④ 그 밖의 인삼	인삼산업법
	121120	인삼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1120	인삼	3. 다음의 것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내재래종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로서 수출할수 있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수산유전자원으로 종자를 포함한다.) ① 인삼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190	기타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1190	기타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1190	기타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190	기타	1.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 대마 2.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살비아디비노럼(Salvia divinorum) ● 크라톰(Kratom) ●페이오트(Peyot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22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1221	식용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1221	식용	통합공고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229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1229	기타	통합공고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3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② 왕겨 및 쌀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30219	기타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490	기타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40490	기타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40490	기타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0110	라드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120	그 밖의 돼지의 지방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210	탤로우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290	기타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410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410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410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420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를 제외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420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를 제외한다)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420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를 제외한다)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430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430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430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600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600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18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식용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52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522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60210	균질화한 조제품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10	균질화한 조제품	2.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0210	균질화한 조제품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20	동물간의 것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20	동물간의 것	2.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0220	동물간의 것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41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41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42	어깨살과 그 절단육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42	어깨살과 그 절단육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4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4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90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90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2.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0290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4.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9	기타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ICCAT협약
	160419	기타	2.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0419	기타	3.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Bigeye)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눈다랑어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또는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ATTC협약
	160420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0431	캐비아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21	밀폐용기에 넣지 아니한 것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1	굴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2	가리비과의 조개(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4	갑오징어와 오징어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5	문어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6	클램, 새조개 및 피조개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7	전복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8	달팽이(바다달팽이를 제외한다)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9	기타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61	해삼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62	성게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63	해파리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69	기타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802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10410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10410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10410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10420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10420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10420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10690	기타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10690	기타	2.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0300	맥주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410	발포성 포도주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421	2리터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422	2리터 초과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429	기타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430	기타 포도즙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51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590	기타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6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청주(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710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에 한한다)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720	변성에틸알콜 및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20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30	위스키류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40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기타 증류주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50	진 및 제네바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60	보드카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70	리큐르류 및 코디얼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20870	리큐르류 및 코디얼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20870	리큐르류 및 코디얼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0870	리큐르류 및 코디얼	4.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20870	리큐르류 및 코디얼	5.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90	기타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20890	기타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20890	기타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0890	기타	4.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20890	기타	5.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30110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펠리트 및 수지박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120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210	옥수수의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230	밀의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240	기타 곡물의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250	채두류의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31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320	비트펄프·버개스 기타 설탕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330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4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5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610	목화씨에서 나온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620	아마씨에서 나온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63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641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64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650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660	팜넛 또는 핵의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690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7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8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40130	담배 부산물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 동식물성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50590	기타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51010	천연 인산칼슘(잘게 부수지 않은 것)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51020	천연 인산칼슘(잘게 부순 것)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51720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소호 제2517.10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도로의 건설 및 보수에서 발생된 타르를 포함한 역청질의 아스팔트 폐기물(A3200) ② 어디에도 특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 시멘트 폐기물(AC02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51730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도로의 건설 및 보수에서 발생된 타르를 포함한 역청질의 아스팔트 폐기물(A3200) ② 어디에도 특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 시멘트 폐기물(AC0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52400	석면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청석면(Crodidolite)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52410	청석면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 수출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52490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 수출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52530	운모 웨이스트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석재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53090	기타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분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61210	우라늄광과 그 정광	1.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61220	토륨광과 그 정광	1.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	2.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617901000	수은광과 그 정광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으며, 수출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 제6조와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②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③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619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슬랙·드로스(입상의 슬랙은 제외한다)·스케일링 및 기타 웨이스트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폐금속류 ③ 폐주물사 및 폐사 ④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19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슬랙·드로스(입상의 슬랙은 제외한다)·스케일링 및 기타 웨이스트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11	경아연 스펠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연소잔재물 ⑤ 오니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11	경아연 스펠타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 아연 잔재물(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납과 카드뮴을 포함)(A10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1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연소잔재물 ⑤ 오니류 ⑥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19	기타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갈바닉전기 슬러지(A1050) ② 자로사이트, 적철광 등과 같은 슬러지, 분진 및 아연가공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 잔재물(A1070) ③ 폐 아연 잔재물(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납과 카드뮴을 포함)(A1080) ④ 폐촉매(A2030) ⑤ 폐블라스트사(AB1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21	유연 가솔린 슬러지 및 유연 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연소잔재물 ⑤ 오니류 ⑥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21	유연 가솔린 슬러지 및 유연 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납성분 녹킹방지제 화합물 슬러지를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2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연소잔재물 ⑤ 오니류 ⑥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29	기타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 6가크롬화합물 ② 갈바닉전기 슬러지(A1050) ③ 주물공정과정에서 사용된 모래(AB070) ④ 폐블라스트사(AB1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3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연소잔재물 ⑤ 오니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3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갈바닉전기 슬러지(A1050) ② 절연구리선 소각잔재(A1090) ③ 동제련 가스정제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분진 및 잔재물(A1100) ④ 동전기정련 및 전기건조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전해용액(A1110) ⑤ 동전기정련 및 전기건조공정의 전해액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양극 제외)(A1120) ⑥ 용해된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부식액(A1130) ⑦ 폐염화구리 및 시안화구리 촉매(A1140) ⑧ 폐촉매(A2030) ⑨ 폐블라스트사(AB130) ⑩ 주물공정과정에서 사용된 모래(AB0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4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연소잔재물 ⑤ 오니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4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블라스트사(AB130) ② 주물공정과정에서 사용된 모래(AB0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60	비소, 수은, 탈륨 또는 이들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의 채취용 또는 그 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연소잔재물 ⑤ 오니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60	비소, 수은, 탈륨 또는 이들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의 채취용 또는 그 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비소 - 수은 - 탈륨 ②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 - 수은화합물 - 탈륨화합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60000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으며, 수출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 제6조와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②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③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62091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 또는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연소잔재물 ⑤ 오니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91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 또는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안티몬 - 베릴륨 - 카드뮴 ②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안티몬화합물 - 베릴륨화합물 - 카드뮴화합물 ③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 6가크롬화합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9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연소잔재물 ⑤ 오니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99	기타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셀레늄 - 텔레륨 ②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납화합물 - 셀레늄화합물 - 텔레륨화합물 ③ 갈바닉전기 슬러지(A1050) ④ 자로사이트, 적철광 등과 같은 슬러지, 분진 및 아연가공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 잔재물(A1070) ⑤ 바나듐재와 잔재물(AA060) ⑥ 폐촉매(A2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11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가정폐기물의 소각 잔재물(바젤협약 부속서 II)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190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분진 ② 소각재 ③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④ 연소잔재물 ⑤ 오니류 ⑥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190	기타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바젤협약 부속서III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하는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부유성 석탄재(A206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1901000	분진(제철, 시멘트 제조공정 등의 대기오염방지지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621902000	석탄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621909000	기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71091	폴리염소화 비페닐(PCS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열전도 유체(A3040) ③ 50㎎/㎏이상의 응축수준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폴리클로리네이티드나프탈렌(PCN), 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PBB)를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물질 및 물품(A3180) ④ 압연유(AC060) ⑤ 브레이크액(AC070) ⑥ 부동액(AC080) ⑦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1	폴리염소화 비페닐(PCS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2.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s)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7109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열전도 유체(A3040) ③ 압연유(AC060) ④ 브레이크액(AC070) ⑤ 부동액(AC080) ⑥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111	천연가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 제1항에 의하여 수출계약승인을 받은 자가 수출할 수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271112	프로판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을 등록을 한 자 또는 석유수출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수출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112	프로판	2. 다음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① 등산버너용 Cartridge에 충전된 가스(포장단위 500g미만분에 한함) ② 내용적 150ℓ미만의 cylinder에 충전된 가스(순도가 99%이상인 것에 한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113	부탄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을 등록을 한 자 또는 석유수출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수출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113	부탄	2. 다음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① 등산버너용 Cartridge에 충전된 가스(포장단위 500g미만분에 한함) ② 내용적 150ℓ미만의 cylinder에 충전된 가스(순도가 99%이상인 것에 한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121	천연가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 제1항에 의하여 수출계약승인을 받은 자가 수출할 수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271390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석유코크스 및 역청탄의 제조, 처리시 발생된 폐기물(A3010) ② 유기물질의 정제, 증류 및 열분해 처리에서 발생되는 폐타르잔재(아스팔트 시멘트 제외)(A319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805400000	수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으며, 수출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 제6조와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②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③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811120000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81119	기타	2.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비산납(Lead arsenate)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81211000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81212000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812130000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812140000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812150000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812160000	설퍼 디클로라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812170000	티오닐 클로라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8121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칼륨)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82560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82619	기타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82690	기타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83329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황산탈륨(Thallium sulfat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83429	기타	2.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황산탈륨(Thallium sulfat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84150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4161	과망간산칼륨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84290	기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뇌홍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4410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천연우라늄 또는 천연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1.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284410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천연우라늄 또는 천연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2. 기타의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28442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1.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28442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2. 기타의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284430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토륨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1.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284430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토륨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8444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2844.10호·제2844.20호·제2844.30호의 것은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1. 다음의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①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성동위원소의 화합물 및 이들의 함유물 ② 방사성의약품	원자력안전법
	28444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2844.10호·제2844.20호·제2844.30호의 것은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2.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844410000	삼중수소와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삼중수소와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원자력안전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1. 방사성동위원소의 화합물 및 이들의 함유물 2. 방사성 의약품	원자력안전법
	2844410000	삼중수소와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삼중수소와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844420000	악티늄-225·악티늄-227·캘리포늄-253·퀴륨-240·퀴륨-241·퀴륨-242·퀴륨-243·퀴륨-244·아인슈타이늄-253·아인슈타이늄-254·가돌리늄-148·폴로늄-208·폴로늄-209·폴로늄-210·라듐-223·우라늄-230·우라늄-232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 원소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원자력안전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1. 방사성동위원소의 화합물 및 이들의 함유물 2. 방사성 의약품	원자력안전법
	2844430000	그 밖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원자력안전법] 1.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2844430000	그 밖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844440000	방사성 잔재물	[원자력안전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1. 방사성동위원소의 화합물 및 이들의 함유물 2. 방사성 의약품	원자력안전법
	28445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요소(카트리지)	1.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2845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845909000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2.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85000	수소화물·질화물·아지화물·규화물 및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849호의 탄화물을 제외한다)	1. 다음의 화약류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아지화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5000	수소화물·질화물·아지화물·규화물 및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849호의 탄화물을 제외한다)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52	무기나 유기의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1. 다음의 화약류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뇌홍 ② 아지화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52	무기나 유기의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①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3,4-Methylene dioxyphenyl-2-propanon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8521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화약류(뇌홍) ● 질화연 ● 아지화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5210000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으며, 수출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 제6조와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②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8529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으며, 수출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 제6조와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②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③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853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그 밖의 무기 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인화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및 그의 분진촉진제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8531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클로르시안)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0314	라. 사염화탄소	1.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19	바. 기타	1.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19	바. 기타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190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41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42	디플루오로메탄(HFC-32)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43	플루오로메탄(HFC-41),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과 1,1-디플루오로에탄(HFC-152a)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44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과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45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과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46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cb),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과 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47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과 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48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과 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HFC-43-10mee)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49	헥사플루오로에탄(CFC-116)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5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03610000	브롬화메틸(브로모메탄)	1. 농산물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브로모메탄(메틸브로마이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71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123)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72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73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 141b)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74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 142b)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75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 225ca, 225cb)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76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77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1.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②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③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④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114) ⑤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CFC-115) ⑥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CFC-13) ⑦ 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CFC-111) ⑧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CFC-112) ⑨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CFC-211) ⑩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CFC-212) ⑪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CFC-213) ⑫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CFC-214) ⑬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CFC-215) ⑭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CFC-216) ⑮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CFC-217) ⑯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21) ⑰ 클로로플루오로메탄(HCFC-31) ⑱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HCFC-124) ⑲ 테트라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21) ⑳ 트리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22) ㉑ 트리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31) ㉒ 디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32) ㉓ 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33) ㉔ 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51) ㉕ 헥사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21) ㉖ 펜타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22) ㉗ 테트라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23) ㉘ 트리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24) ㉙ 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HCFC-226) ㉚ 펜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31) ㉛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32) ㉜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33)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77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79	기타	1.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②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③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④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114) ⑤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CFC-115) ⑥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CFC-13) ⑦ 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CFC-111) ⑧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CFC-112) ⑨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CFC-211) ⑩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CFC-212) ⑪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CFC-213) ⑫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CFC-214) ⑬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CFC-215) ⑭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CFC-216) ⑮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CFC-217) ⑯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21) ⑰ 클로로플루오로메탄(HCFC-31) ⑱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HCFC-124) ⑲ 테트라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21) ⑳ 트리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22) ㉑ 트리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31) ㉒ 디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32) ㉓ 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33) ㉔ 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51) ㉕ 헥사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21) ㉖ 펜타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22) ㉗ 테트라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23) ㉘ 트리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24) ㉙ 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HCFC-226) ㉚ 펜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31) ㉛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32) ㉜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33)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79	기타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79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0381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을 포함한다(ISO, INN)]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 및 이를 1.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0381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린데인(Lindane;58-89-9) ●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세인(Alpha hexachlorocyclohexane;319-84-6) ●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세인(Beta hexachlorocyclohexane;319-85-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38200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헵타클로르(ISO)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알드린(Aldrin;309-00-2) ● 클로르데인(Chlordane;57-74-9) ● 헵타클로르(Heptachlor;76-44-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3830000	미렉스(ISO)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미렉스(Mirex;2385-85-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3891000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s)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Hexabromocyclododecane)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HBCD;25637-99-4), 1,2,5,6,9,10-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1,2,5,6,9,10-HBCD;3194-55-6), 알파-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α-HBCD;134237-50-6), 베타-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β-HBCD;134237-51-7), 감마-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γ-HBCD;134237-5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3899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톡사펜(Toxaphene;8001-35-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392	헥사클로로벤젠 및 디.디.티[1, 1, 1-트리클로로-2, 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디디티(DDT)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03920000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헥사클로로벤젠(Hexachlorobenzene;118-74-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3920000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디디티[1,1,1-trichloro-2,2-bis(4-chlorophenyl)ethane, DDT;50-29-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3930000	펜타클로로벤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펜타클로로벤젠(Pentachlorobenzene, PeCB;608-93-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3940000	헥사브로모비페닐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헥사브로모바이페닐(Hexabromobiphenyl;36355-01-8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399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헥사브로모비페닐(Hexabromobiphenyl) ② 옥타브로모비페닐(Octabromobiphenyl) ③ 데카브로모비페닐(Decabromobiphenyl) ④ 피시비(PCB) ⑤ 피시티(PCT)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0399	기타	2.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피비비(PBBs)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단, 헥사브로모비페닐(Hexabromobiphenyl), 옥타브로모비페닐(Octabromobiphenyl), 데카브로모비페닐(Decabromobiphenyl)은 제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0420	니트로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1.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290420	니트로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2.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트리니트로벤젠 ② 트리니트로톨루엔 ③ 피크린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0431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과불화옥테인설폰산(PFOS;1763-23-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432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암모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암모늄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29081-56-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433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리튬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Lithium perfluorooctane sulfonate;29457-72-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434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포타슘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Potassium perfluorooctane sulfonate;2795-39-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4360000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과불화옥테인설포닐플로라이드(PFOS-F;307-35-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49	기타	1.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29049	기타	2.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② 클로르단(Chlordan)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③ 헵타클로르(Heptachlor)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049	기타	3.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트리니트로 클로로벤젠 ② 기타 니트로가 3이상을 함유한 화합물 및 이를 주로한 폭약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0491000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04990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5199010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알코올)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06290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디코폴(Dicofol;115-32-2,10606-46-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811	펜타클로로페놀(ISO)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08110000	펜타클로로페놀(ISO)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스터(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 펜타클로로페놀(PCP; 87-86-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819	기타	2.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08199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스터(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 소듐 펜타클로로페놀(Sodium pentachlorophenate, NaPCP;131-52-2), 소듐 펜타클로로페네이트 1수화물(Sodium pentachlorophenate as monohydrate;27735-64-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899	기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피크린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0919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② 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Bis(2-chloroethyl)ether]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0930	방향족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니트로펜(Nitrofen)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0930	방향족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트리니트로아니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0930909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스터(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 펜타클로로아니솔(Pentachloroanisole, PCA;1825-21-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9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콜페놀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 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 다음의 화약류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트리니트로 아니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09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콜페놀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 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0960	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 할 수 있음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트리니트로아니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10400000	디엘드린(ISO, INN)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디엘드린(Dieldrin;60-57-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10500000	엔드린(ISO)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엔드린(Endrin;72-20-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1411	아세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1431	페닐 아세톤(페닐프로판-2-온)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14710000	클로르데콘(ISO)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클로르데콘(Chlordecone;143-50-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1524	무수초산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1529	기타	2.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1590	8. 기타	2.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1590909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스터(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 펜타클로로페닐 라우레이트(Pentachlorophenyl laurate, PCPL:3772-94-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1634	페닐아세트산 및 그 염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1639	기타	2.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아크린아트린(Acrinathrin)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②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1815	기타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험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918170000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1819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191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Tris(2,3-dibromopropyl)phosphate]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1990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② 포스파미돈(Phosphamidon)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1990	기타	2.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Tris(2,3-dibromopropyl)phosphate]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2011	파라티온(ISO) 및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파라티온(Parathion)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② 렙토포스(Leptophos)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③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④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2019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파라티온(Parathion)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② 렙토포스(Leptophos)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③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④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20210000	디메틸 포스파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20220000	디에틸 포스파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20230000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20240000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20309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Technical endosulfan and its related isomer):엔도설판(Endosulfan;115-29-7), 엔도설판 설페이트(Endosulfan sulfate;1031-07-8), 알파-엔도설판(α-Endosulfan;959-98-8), 베타-엔도설판(β-Endosulfan;33213-65-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2090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다이알리포스(Dialifos)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② 디술포톤(Disulfoton)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③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④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2090	기타	2. 다음의 화약류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니트로글리세린 ② 니트로글리콜 ③ 니트로셀루로이스로서 질소함량이 12.2%이상의 것 ④ 기타 질산에스테르로서 폭약의 성질을 가진 것과 질산에스테르로를 주로한 폭약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090	기타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090919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Technical endosulfan and its related isomer):엔도설판(Endosulfan;115-29-7), 엔도설판 설페이트(Endosulfan sulfate;1031-07-8), 알파-엔도설판(α-Endosulfan;959-98-8), 베타-엔도설판(β-Endosulfan;33213-65-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209099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Technical endosulfan and its related isomer):엔도설판(Endosulfan;115-29-7), 엔도설판 설페이트(Endosulfan sulfate;1031-07-8), 알파-엔도설판(α-Endosulfan;959-98-8), 베타-엔도설판(β-Endosulfan;33213-65-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2111	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과 그들의 염	1. 다음의 화약류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테트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111	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과 그들의 염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1120000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21130000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21140000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21199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21199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2142	아닐린유도체와 그들의 염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2142	아닐린유도체와 그들의 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테트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143	톨루이딘과 그들의 유도체 및 이들의 염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트리플루라린(Trifluralin)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2144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및 그들의 염	1. 다음의 화약류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헥사니트로 페닐아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144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145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2146	암페타민, 벤즈페타민, 덱스암페타민, 에칠암페타민, 펜캄파민, 레페타민, 레브암페타민, 메페노렉스, 펜터민 및 그들의 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테트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149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4-아미노디페닐[4-Aminodiphenyl]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2149	기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테트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151	오르토-페닐렌디아민·메타-페닐렌디아민·파라-페닐렌디아민·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테트릴 ● 헥사니트로디 페닐아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159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벤지딘(Benzidine)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② 피리미닐(Pyriminil)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22121000	디에탄올아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22150000	트리에탄올아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2216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에탄올암모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다이에탄올암모늄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Diethanol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70225-14-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22171000	메틸디에탄올아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22172000	에틸디에탄올아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22180000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221930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아미노에탄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2249	기타	1.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① 엔-아세틸안스라닉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2330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테트라에틸암모늄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Tetraethyl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56773-42-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2340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다이데실다이메틸암모늄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Didecyldimethyl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251099-16-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24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및 포스파미돈(ISO)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알디캅(Aldicarb)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2419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알디캅(Aldicarb)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24299099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2521	클로르디메포름(ISO)	1. 다음의 화약류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로아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521	클로르디메포름(ISO)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529	기타	1. 다음의 화약류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로아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529	기타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700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아족시화합물	1. 다음의 화약류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다이조다 니트로 페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700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아족시화합물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990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플루아지남(Fluazinam)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2990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010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탄티올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0600000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티올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0700000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술파이드 [티오디글리콜(INN)]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080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안투(Antu)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② 캡탄(Captan)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③ 캡타폴(Captafol)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3090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안투(Antu)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② 캡탄(Captan)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③ 캡타폴(Captafol)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30909090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2.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090909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3110	테트라메틸납, 테트라에틸납	2.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3120	트리부틸틴 화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31410000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1410000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1420000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1420000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1430000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1430000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1440000	메틸포스폰산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1450000	메틸포스폰산과 (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 염(1 : 1)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1450000	메틸포스폰산과 (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 염(1 : 1)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1460000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네인 2,4,6-트리옥사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1460000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난-2,4,6-트리옥사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1470000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1470000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1480000	3,9-디메틸-2,4,8,10-테트라옥사-3,9-디포스파스피로[5.5] 운데칸 3,9-디옥사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14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14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151	메틸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52	프로필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53	오(3클로로프로필) 오[4니트로3(트리플루오르메틸)페닐] 메틸포스포노티오네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59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90	기타	2.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31902000	유기-비소 화합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903000	유기-인 화합물	1.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1904000	불소 화합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905000	염소화합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2199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3220	락톤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음. ●감마부티로락톤(Gamma-butyro lacton)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291	이소사프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293	피페로날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294	사프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299	기타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①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3,4-Methylene dioxyphenyl-2-propanon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3350000	3-퀴뉴클리디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339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파라콰트(Paraquat) 염류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333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3369	기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3399909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3499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엔도술판(Endosulfan)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34999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35200000	엔-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N-에틸-1,1,2,2,3,3,4,4,5,5,6,6,7,7,8,8,8-헵타데카플루오로-1-옥테인설폰아마이드, N-에틸퍼플루오로옥테인-1-설폰아마이드(N-Ethyl-1,1,2,2,3,3,4,4,5,5,6,6,7,7,8,8,8-heptadecafluoro-1-octanesulfonamide, N-Ethylperfluorooctane-1-sulfonamide;4151-50-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35909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3941	에페드린과 그 염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42	슈도에페그린(INN)과 그 염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44	놀에페드린과 그 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49	기타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① 놀에페드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61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62	엘고타민(INN)과 그 염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63	리세르그산과 그 염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8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294190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00249	기타(리신에 한함)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002491000	독소, 톡소이드(toxoid), 크립토독소(cryptotoxin), 항독소(anti-toxin)	다음은 통합공고 별표13의2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s) • 웰치균 독소(Clostridium perfringens epsilon toxins) • 코노 독소(Conotoxin) • 시가 독소(Shiga toxin) • 포도상구균 장독소(Staphylococcus aureus toxins) • 복어독(Tetrodotoxin) • 베로톡신(Verotoxin) • 마이크로시스틴(시안지노신)[Microcystin(Cyanginosin)] • 아플라톡신(Aflatoxins) • 아브린(Abrin) • Diacetoxyscirpenol toxin • T-2 toxin • 볼켄신 독소(Volkensin toxin)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
	3002492000	미생물 배양체	다음은 통합공고 별표13의2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인체·인수병원균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 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큐열균(Coxiella burnetii) •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동물병원균 • 우폐역(Mycoplasma mycoides) - 식물병원균 • 구름무늬병균(Xanthomonas albilineans) • 감귤궤양병(Xanthomonas campestris pv. citri) • 벼흰잎마름병균(Xanthomonas campestris pv. oryzae) • 감자둘레썩음병균(Clavibacter michiganese subsp. sepedonicum) • 풋마름병원균(Ralstonia solanacearum) • 커피탄저병균(Colletotrichum coffeanum var. virulans) • 깨씨무늬병균[Cochliobolus miyabeanus(Helminthosporium oryzae)] • Mycrocyclus ulei(syn. Dothidelia ulei) • 줄기녹병균[Puccinia graminis(syn. Puccinia graminis f. sp. tritici)] • 줄녹병균[Puccinia striiformis(syn. Puccinin glumarum)] • 도열병균(Pyricularia grisea / Pyricularia oryzae)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
	3002493000	기타(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를 포함한다)	다음은 통합공고 별표13의2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인체·인수병원균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i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동부 마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라사열 바이러스(Lassa fever virus)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원숭이 폭스 바이러스(Monkey pox virus) •리프트계곡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참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virus(Russian Spring-Summer encephalitis, Kyasanur Forest, Omsk Hemorrhagic Fever))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베네주엘라 마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Equine morbillivirus))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Sabia,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우해면양 뇌병증 병원체(Bovine Spongiform encephalophathy agent) - 동물병원균 •아프리카돼지열 바이러스(African swine fever virus)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virus(Highly pathogenic)]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

	3002494000	기타	다음은 통합공고 별표13의2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인체·인수병원균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 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큐열균(Coxiella burnetii) •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동물병원균 • 우폐역(Mycoplasma mycoides) - 식물병원균 • 구름무늬병균(Xanthomonas albilineans) • 감귤궤양병(Xanthomonas campestris pv. citri) • 벼흰잎마름병균(Xanthomonas campestris pv. oryzae) • 감자둘레썩음병균(Clavibacter michiganese subsp. sepedonicum) • 풋마름병원균(Ralstonia solanacearum) • 커피탄저병균(Colletotrichum coffeanum var. virulans) • 깨씨무늬병균[Cochliobolus miyabeanus(Helminthosporium oryzae)] • Mycrocyclus ulei(syn. Dothidelia ulei) • 줄기녹병균[Puccinia graminis(syn. Puccinia graminis f. sp. tritici)] • 줄녹병균[Puccinia striiformis(syn. Puccinin glumarum)] • 도열병균(Pyricularia grisea / Pyricularia oryzae)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
	30029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300692	폐의료용품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00692	폐의료용품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③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00692	폐의료용품	3.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만 해당한다)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101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액상돼지거름; 배설물(AC26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104200000	염화칼륨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3206500000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	1. 다음의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무기의 자발광 도료, 무기의 자발광 착색제) ① Pm-147 : 수량 및 농도가 각각 1 *107Bq, 1 × 10^4 (Bq/g)이상의 것 ② H-3 : 수량 및 농도가 각각 1*109Bq, 1 × 106(Bq/g)이상의 것	원자력안전법
	360100	화약	1.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360100	화약	2. 군용이외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200	폭약(화약을 제외한다)	1.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360200	폭약(화약을 제외한다)	2. 군용이외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3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1.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3603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2. 군용이외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410	불꽃제품	1. 다음의 군용 이외의 화학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신호염관 ② 신호화전 ③ 기타 신호용 화공품 ④ 꽃불류, 장남감꽃불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410	불꽃제품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490	기타	1. 다음의 군용 이외의 화학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490	기타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085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의 물품	1. 브로모메탄을 기제로 한 것중 농산물 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08520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정한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디디티[1,1,1-trichloro-2,2-bis(4-chlorophenyl)ethane, DDT;50-29-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808590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디디티[1,1,1-trichloro-2,2-bis(4-chlorophenyl)ethane, DDT;50-29-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80891	살충제	1. 브로모메탄을 기제로 한 것중 농산물 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0892	살진균제	1. 브로모메탄을 기제로 한 것중 농산물 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1512	백금이나 백금화합물의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촉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151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촉매(A2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1519	기타	2.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촉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1590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촉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2193099	기타	다음은 통합공고 별표13의2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s) • 웰치균 독소(Clostridium perfringens epsilon toxins) • 코노 독소(Conotoxin) • 시가 독소(Shiga toxin) • 포도상구균 장독소(Staphylococcus aureus toxins) • 복어독(Tetrodotoxin) • 베로톡신(Verotoxin) • 마이크로시스틴(시안지노신)[Microcystin(Cyanginosin)] • 아플라톡신(Aflatoxins) • 아브린(Abrin) • Diacetoxyscirpenol toxin • T-2 toxin • 볼켄신 독소(Volkensin toxin)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 (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s) ● 헥사브로모바이페닐(Hexabromobiphenyl;36355-01-8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알드린(Aldrin;309-00-2) ● 엔드린(Endrin;72-20-8) ● 디엘드린(Dieldrin;60-57-1) ● 톡사펜(Toxaphene;8001-35-2) ● 클로르데인(Chlordane;57-74-9) ● 헵타클로르(Heptachlor;76-44-8) ● 미렉스(Mirex;2385-85-5) ● 클로르데콘(Chlordecone;143-50-0) ●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Technical endosulfan and its related isomer):엔도설판(Endosulfan;115-29-7), 엔도설판 설페이트(Endosulfan sulfate;1031-07-8), 알파-엔도설판(α-Endosulfan;959-98-8), 베타-엔도설판(β-Endosulfan;33213-65-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2.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디디티[1,1,1-trichloro-2,2-bis(4-chlorophenyl)ethane, DDT;50-29-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린데인(Lindane;58-89-9) ●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세인(Alpha hexachlorocyclohexane;319-84-6) ●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세인(Beta hexachlorocyclohexane;319-85-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82486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펜타클로로벤젠(Pentachlorobenzene, PeCB;608-93-5) ● 헥사클로로벤젠(Hexachlorobenzene;118-74-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82487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과불화옥테인설폰산(PFOS;1763-23-1) ●과불화옥테인설포닐플로라이드(PFOS-F;307-35-7) ●포타슘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Potassium perfluorooctane sulfonate;2795-39-3) ●리튬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Lithium perfluorooctane sulfonate;29457-72-5) ●암모늄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29081-56-9) ●다이에탄올암모늄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Diethanol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70225-14-8) ●테트라에틸암모늄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Tetraethyl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56773-42-3) ●다이데실다이메틸암모늄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Didecyldimethyl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251099-16-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824890000	짧은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85535-84-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8249	기타	2.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38249	기타	3.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피시비(PCB)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824920000	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82499	기타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382499	기타	2.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분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49931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포스포나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824993910	하나의 인(燐) 원자가 하나의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탄소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화학품으로 주로 구성된 그 밖의 혼합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3824993990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2.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382499909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Hexabromocyclododecane)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HBCD;25637-99-4), 1,2,5,6,9,10-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1,2,5,6,9,10-HBCD;3194-55-6), 알파-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α-HBCD;134237-50-6), 베타-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β-HBCD;134237-51-7), 감마-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ɣ-HBCD;134237-52-8)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82510	생활폐기물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가정으로부터 수거된 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II) ②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III의 특성을 지닐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 I 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20	하수 찌꺼기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하수슬러지(AC2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30	감염성 폐기물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41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41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할로겐화 폐유기용제(A3150) ② 유기용제 재생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분을 함유하지 않는할로겐 또는 비할로겐화 증류잔재(A3160) ③ 지방족화합물의 할로겐화 탄화수소(클로르메탄, 디클로르에탄, 비닐클로라이드,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알릴클로라이드, 에피크로르하이드린)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A3170) ④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락카, 니스 생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70) ⑤ 달리 불류되지 않은 무기할로겐화합물(AB120) ⑥ 염화불화탄소(AC150) ⑦ 할론(AC16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4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49	기타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에테르(A3080) ② 비할로겐화 폐유기용제(A3140) ③ 유기용제 재생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분을 함유하지 않는할로겐 또는 비할로겐화 증류잔재(A3160) ④ 지방족화합물의 할로겐화 탄화수소(클로르메탄, 디클로르에탄, 비닐클로라이드,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알릴클로라이드, 에피크로르하이드린)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A3170) ⑤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락카, 니스 생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5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금속 세척시 발생되는 폐용액(A1060) ②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③ 압연유(AC060) ④ 브레이크액(AC070) ⑤ 부동액(AC0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61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오니류 ② 폐페인트 및 폐락카 ③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61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석유코크스 및 역청탄의 제조, 처리시 발생된 폐기물(A3010) ②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③ 폐질산섬유소 (A3060) ④ 폐페놀, 페놀화합물(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클로로페놀 포함)(A3070) ⑤ 폐에테르(A3080) ⑥ 폐유기인화합물(A3130) ⑦ 유기용제 재생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분을 함유하지 않는할로겐 또는 비할로겐화 증류잔재(A3160) ⑧ 지방족화합물의 할로겐화 탄화수소(클로르메탄, 디클로르에탄, 비닐클로라이드,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알릴클로라이드, 에피크로르하이드린)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A3170) ⑨ 유기물질의 정제, 증류 및 열분해 처리에서 발생되는 폐타르잔재(아스팔트 시멘트 제외)(A3190) ⑩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⑪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⑫ 목재보존화학물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40) ⑬ 다음의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050) - 미량의 무기시안화물을 함유한 고형의 귀금속함유 잔재물을 제외한 무기시안화물 - 유기시안화물 ⑭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락카, 니스 생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70) ⑮ 다음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1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6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② 폐석고 및 폐석회류 ③ 폐페인트 및 폐락카 ④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69	기타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가스정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1100) ② 용해된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부식액(A1130) ③ 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폐 무기불소화합물(A2020) ④ 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고(바젤협약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포함한 것)(A2040) ⑤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⑥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⑦ 목재보존화학물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40) ⑧ 다음의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050) - 미량의 무기시안화물을 함유한 고형의 귀금속함유 잔재물을 제외한 무기시안화물 - 유기시안화물 ⑨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⑩ 폐산 또는 폐알카리 용액(A4090) ⑪ 다음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11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퓨란과 동종인 것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다이옥신과 동종인 것 ⑫ 과산화물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1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90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오니류 ②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③ 폐석고 및 폐석회류 ④ 폐페인트 및 폐락카 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90	기타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Metal carbonyls) - 6가크롬화합물 ② 가스정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1100) ③ 용해된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부식액(A1130) ④ 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폐 무기불소화합물(A2020) ⑤ 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고(바젤협약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포함한 것)(A2040) ⑥ 열전도 유체(A3040) ⑦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⑧ 폐페놀, 페놀화합물(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클로로페놀 포함)(A3070) ⑨ 폐유기인화합물(A3130) ⑩ 유기용제 재생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분을 함유하지 않는할로겐 또는 비할로겐화 증류잔재(A3160) ⑪ 지방족화합물의 할로겐화 탄화수소(클로르메탄, 디클로르에탄, 비닐클로라이드,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알릴클로라이드, 에피크로르하이드린)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A3170) ⑫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⑬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⑭ 목재보존화학물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40) ⑮ 다음의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050) - 미량의 무기시안화물을 함유한 고형의 귀금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7111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을 기본 재료로 한 세정제	1.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119000	기타	1.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120000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s)를 함유하는 것	1.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130000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1.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140000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1.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20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을 함유하는 것	1.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310000	소호 제2903.41호부터 제2903.48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	1.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320000	기타(소호 제2903.71호부터 제2903.75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390000	기타	1.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400000	메틸 브로마이드(브로모메탄)나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한 것	1.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90190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072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3907210000	비스(폴리옥시에틸렌) 메틸포스포네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3907291010	수소불화탄소(H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한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907292010	수소불화탄소(H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한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90730	에폭시 수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0740	폴리카보네이트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09310000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중합 엠디아이)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91000909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911200000	폴리(1,3-페닐렌 메틸포스포네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39119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3911909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91220	질산셀룰로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1.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군용 이외의 화약류(질소함유량이 12.2%이상의 것)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1220	질산셀룰로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15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전기.전자제품류 ②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③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A41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2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전기.전자제품류 ② 폐합성수지(단, 고체상의 것은 제외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2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③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A41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3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전기.전자제품류 ②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3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③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A41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90	기타 플라스틱의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전기.전자제품류 ②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90	기타 플라스틱의 것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② 폐질산섬유소(A3060) ③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④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A4130) ⑤ 이온교환수지(AD1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2073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003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004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타이어 ②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004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01211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타이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01212	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타이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01213	항공기용의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타이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0121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타이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01220	중고 공기타이어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타이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1012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생 것·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12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생 것·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150	전신원피(1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150	전신원피(1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190	기타(버트, 벤드 및 벨리를 포함한다)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190	기타(버트, 벤드 및 벨리를 포함한다)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20	파충류의 것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20	파충류의 것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20	파충류의 것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0320	파충류의 것	4.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30	돼지의 것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30	돼지의 것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90	기타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90	기타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90	기타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0390	기타	4.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90	기타	5.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4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4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419	기타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419	기타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44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44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449	기타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449	기타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2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2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3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중 비고란에 ○이 표시된 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권한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3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중 비고란에 'III'이 표시된 생물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6조제3항제2호제바목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권한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3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중 비고란에 ○이 표시된 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권한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3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중 비고란에 'III'이 표시된 생물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6조제3항제2호제바목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권한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40	파충류의 것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40	파충류의 것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40	파충류의 것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0640	파충류의 것	4.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9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9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9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069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9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9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9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069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4.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12	그레인 스프릿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12	그레인 스프릿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19	기타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19	기타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9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9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92	그레인 스프릿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92	그레인 스프릿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99	기타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99	기타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330	파충류의 것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330	파충류의 것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330	파충류의 것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1390	기타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390	기타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390	기타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1390	기타	4.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410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410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410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1410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4.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420	페이턴트레더와 적층한 페이턴트레더 및 메탈라이즈드레더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420	페이턴트레더와 적층한 페이턴트레더 및 메탈라이즈드레더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420	페이턴트레더와 적층한 페이턴트레더 및 메탈라이즈드레더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1420	페이턴트레더와 적층한 페이턴트레더 및 메탈라이즈드레더	4.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510	콤포지션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슬랩상·쉬트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510	콤포지션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슬랩상·쉬트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510	콤포지션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슬랩상·쉬트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1510	콤포지션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슬랩상·쉬트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4.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520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의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가죽의 더스트와 분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520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의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가죽의 더스트와 분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520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의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가죽의 더스트와 분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1520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의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가죽의 더스트와 분	4.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520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의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가죽의 더스트와 분	5.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11520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의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가죽의 더스트와 분	6.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6가크롬 또는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한 폐가죽 물품 분진, 재, 슬러지 및 분말(A3090) ② 가죽물품 제조에 부적합한 가죽이나 합성가죽 폐기물(6가크롬 또는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한 것)(A3100) ③ 6가크롬화합물 또는 생체독성물질 또는 전염성물질 함유한 양피처리과정으로부터 발생되는 가죽 폐기물(A31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20100	동물용의 마구(고삐줄·끈·무릎받이·재갈·안장용 방석·안장에 다는 주머니·개용 코트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20100	동물용의 마구(고삐줄·끈·무릎받이·재갈·안장용 방석·안장에 다는 주머니·개용 코트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20100	동물용의 마구(고삐줄·끈·무릎받이·재갈·안장용 방석·안장에 다는 주머니·개용 코트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0100	동물용의 마구(고삐줄·끈·무릎받이·재갈·안장용 방석·안장에 다는 주머니·개용 코트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4.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202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포지션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백·운동용구백·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202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포지션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백·운동용구백·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202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포지션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백·운동용구백·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203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것에 한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203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것에 한한다)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203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것에 한한다)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205	기타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제품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205	기타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제품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205	기타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제품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60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1.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60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60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3.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60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80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80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80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80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9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9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9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9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219	기타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219	기타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219	기타	3.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22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22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22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22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230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 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230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 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230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 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230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 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10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10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10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90	기타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90	기타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90	기타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4011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0121	침엽수류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0122	활엽수류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0131	목재 펠리트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40131	목재 펠리트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0131	목재 펠리트	2.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목재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40131	목재 펠리트	3.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AC1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40139	기타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40139	기타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0139	기타	2.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목재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40139	기타	3.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AC1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4032	기타(침엽수류의 것에 한한다)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0410	침엽수류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0420	활엽수류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0500	목모와 목분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	침엽수류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1	참나무류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2	너도밤나무류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	기타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0910	침엽수류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0921	대나무제의 것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0190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목재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50190	기타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AC1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7071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판지로 만든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 폐지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7072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 폐지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7073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 폐지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7079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 폐지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82390	기타(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 웹으로 만든 제품)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90700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1.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다.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라.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마.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바. 주한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490700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사.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490700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아.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490700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자.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490700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차.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490700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카.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490700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490700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파.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등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490700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하. 거주자가 미화 5만불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화폐수집용, 기념용, 자동판매기시험용, 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490700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거.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490700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2.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 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
	500300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사웨이스트 및 가아냇스톡을 포함한다)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10310	양모 또는 섬수모의 노일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10320	양모 또는 섬수모의 기타 웨이스트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섬유 ② 동식물성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10330	조수모의 웨이스트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섬유 ② 동식물성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2021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20291	가아넷스톡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2029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30130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30290	대마의 웨이스트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30390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30500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라미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하며,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및 이들의 토우·노일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50510	합성섬유의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5052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60811	제품으로 된 어망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6081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60890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630900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631010	선별한 것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631090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6815990000	기타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690390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촉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001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제8549호의 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와 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제외한다], 유리 괴(塊)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유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001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제8549호의 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와 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제외한다], 유리 괴(塊)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A201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0811	분	1.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710811	분	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1	분	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외국환거래법
	710811	분	다.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1	분	라.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1	분	마.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1	분	바. 주한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1	분	사.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1	분	아.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1	분	자.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1	분	차.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1	분	카.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1	분	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1	분	파.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등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1	분	하. 거주자가 미화 5만불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화폐수집용, 기념용, 자동판매기시험용, 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1	분	거.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1	분	2.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 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1.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외국환거래법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다.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라.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마.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바. 주한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사.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아.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자.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차.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카.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파.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등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하. 거주자가 미화 5만불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화폐수집용, 기념용, 자동판매기시험용, 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거.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2.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 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외국환거래법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다.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라.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마.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바. 주한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사.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아.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자.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차.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카.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파.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등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하. 거주자가 미화 5만불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화폐수집용, 기념용, 자동판매기시험용, 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거.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2.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 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
	710820	화폐용의 것	1.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710820	화폐용의 것	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20	화폐용의 것	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외국환거래법
	710820	화폐용의 것	다.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20	화폐용의 것	라.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20	화폐용의 것	마.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20	화폐용의 것	바. 주한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20	화폐용의 것	사.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20	화폐용의 것	아.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20	화폐용의 것	자.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20	화폐용의 것	차.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20	화폐용의 것	카.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20	화폐용의 것	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20	화폐용의 것	파.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등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20	화폐용의 것	하. 거주자가 미화 5만불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화폐수집용, 기념용, 자동판매기시험용, 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20	화폐용의 것	거.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0820	화폐용의 것	2.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 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
	711230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연소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30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인쇄회로기판 소각시 발생되는 고가금속의 재(A115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브스러기는 제외한다)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촉매 ② 연소잔재물 ③ 폐전기.전자제품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브스러기는 제외한다)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인쇄회로기판 소각시 발생되는 고가금속의 재(A1150) ②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넬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③ 폐촉매(A2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2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촉매 ② 연소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2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인쇄회로기판 소각시 발생되는 고가금속의 재(A1150) ② 폐촉매(A2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촉매 ② 연소잔재물 ③ 폐전기.전자제품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9	기타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인쇄회로기판 소각시 발생되는 고가금속의 재(A1150) ②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넬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③ 폐촉매(A2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590	기타	1.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711590	기타	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590	기타	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외국환거래법
	711590	기타	다.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590	기타	라.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590	기타	마.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590	기타	바. 주한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590	기타	사.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590	기타	아.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590	기타	자.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590	기타	차.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590	기타	카.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590	기타	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 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590	기타	파.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등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590	기타	하. 거주자가 미화 5만불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화폐수집용, 기념용, 자동판매기시험용, 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590	기타	거.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590	기타	2.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 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
	711890	기타	1.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711890	기타	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890	기타	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외국환거래법
	711890	기타	다.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890	기타	라.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890	기타	마.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890	기타	바. 주한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890	기타	사.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890	기타	아.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890	기타	자.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890	기타	차.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890	기타	카.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890	기타	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 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890	기타	파.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등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890	기타	하. 거주자가 미화 5만불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화폐수집용, 기념용, 자동판매기시험용, 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890	기타	거.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890	기타	2.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 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
	720410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20421	스테인리스강의 것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2042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2043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20441	선삭・셰이빙・칩・밀링웨이스트・톱밥・파일링・트리밍 및 스탬핑(번들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금속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20441	선삭・셰이빙・칩・밀링웨이스트・톱밥・파일링・트리밍 및 스탬핑(번들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안티몬 - 비소 - 베릴륨 - 카드뮴 - 납 - 수은 - 셀레늄 - 텔레륨 - 탈륨 ②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안티몬화합물 - 베릴륨화합물 - 카드뮴화합물 - 납화합물 - 셀레늄화합물 - 텔레륨화합물 ③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 - 수은화합물 - 탈륨화합물 ④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 6가크롬화합물 ⑤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2044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금속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20449	기타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안티몬 - 비소 - 베릴륨 - 카드뮴 - 납 - 수은 - 셀레늄 - 텔레륨 - 탈륨 ②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안티몬화합물 - 베릴륨화합물 - 카드뮴화합물 - 납화합물 - 셀레늄화합물 - 텔레륨화합물 ③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 - 수은화합물 - 탈륨화합물 ④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 6가크롬화합물 ⑤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2045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안티몬 - 비소 - 베릴륨 - 카드뮴 - 납 - 수은 - 셀레늄 - 텔레륨 - 탈륨 ②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안티몬화합물 - 베릴륨화합물 - 카드뮴화합물 - 납화합물 - 셀레늄화합물 - 텔레륨화합물 ③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 - 수은화합물 - 탈륨화합물 ④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 6가크롬화합물 ⑤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31029	기타	1.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731100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1.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7404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절연구리선 소각잔재(A1090) ②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넬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③ 콜타르, PCB, 납, 카드뮴, 기타 유기할로겐화합물이나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의 부속서 I의 성분으로 오염되었거나 이를 함유한 플라스틱으로 코팅 또는 절연된 금속 케이블 폐기물(A1190) ④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40620	층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4082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절연구리선 소각잔재(A1090)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③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50300	니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넬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50400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오니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602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넬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802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납 ②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③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넬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④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90200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자로사이트, 적철광 등과 같은 슬러지, 분진 및 아연가공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 잔재물(A1070) ② 폐 아연 잔재물(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납과 카드뮴을 포함)(A1080) ③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넬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90310	아연더스트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자로사이트, 적철광 등과 같은 슬러지, 분진 및 아연가공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 잔재물(A10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10420	웨이스트와 스크랩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마그네슘 폐기물과 스크랩(다량의 물, 가연성 가스와 접촉할 경우 가연성, 발연성일 것)(AA19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11020	웨이스트와 스크랩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안티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11213	웨이스트와 스크랩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베릴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11252	웨이스트와 스크랩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탈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11292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갈바닉 전기 슬러지(A105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1129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갈바닉 전기 슬러지(A105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20190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수도구	1. 다음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치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인 것)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20190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수도구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211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1.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단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인 것) ② 비수(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인 것) ③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이상인 것) ④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방위사업법
	8211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2. 기타의 것(주방용 칼을 포함)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21192	칼날이 고정된 기타의 칼	1.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단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인 것) ② 비수(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인 것) ③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이상인 것) ④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방위사업법
	821192	칼날이 고정된 기타의 칼	2. 기타의 것(주방용 칼을 포함)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21193	칼날이 고정된 것 이외의 칼	1.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단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인 것) ② 비수(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인 것) ③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이상인 것) ④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방위사업법
	821193	칼날이 고정된 것 이외의 칼	2. 기타의 것(주방용 칼을 포함)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21194	칼날	1.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단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인 것) ② 비수(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인 것) ③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이상인 것) ④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방위사업법
	821194	칼날	2. 기타의 것(주방용 칼을 포함)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30629	기타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830629	기타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830630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거울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830630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거울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84013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1.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840140	원자로의 부분품	1.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841340	콘크리트 펌프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① 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 배송능력이 매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2720	기타의 자주식 작업트럭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①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설기계관리법
	8429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벨러·스크레이퍼·메카니컬셔블·엑스카베이터·셔블로더·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① 불도우저 : 무한궤도식 또는 타이어식인 것 ②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③ 스크레이퍼 :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④ 롤러 가.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나. 피견인 진동식인 것 ⑤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⑥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건설기계관리법
	843010	항타기와 항발기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①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②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304	기타 천공용 또는 시굴용 기계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①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②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439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47420	파쇄기와 분쇄기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① 쇄석기 : 20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②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 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③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 건조가열장치, 혼합장치, 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7431	콘크리트 혼합기와 모르타르 혼합기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① 쇄석기 : 20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②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 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③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 건조가열장치, 혼합장치, 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7432	역청질과 광물성재료의 혼합기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① 쇄석기 : 20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②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 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③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 건조가열장치, 혼합장치, 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7910	토목공사·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①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콘크리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③ 콘크리트 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④ 아스팔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⑤ 아스팔트 살포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⑥ 노면파쇄기 : 도로를 연속하여 파쇄할 수 있는 파쇄장치와 원동기 등을 가진 것	건설기계관리법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1.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2.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8504101010	전류가 1암페어 이하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출할 수 없음. ● 유입식 안정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101020	전류가 1암페어 초과 20암페어 이하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출할 수 없음. ● 유입식 안정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102000	전류가 20암페어 초과 60암페어 이하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출할 수 없음. ● 유입식 안정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103000	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출할 수 없음. ● 유입식 안정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211000	계기용 변압기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출할 수 없음. ● 유입식 변압기 ●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21901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출할 수 없음. ● 유입식 변압기 ●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21902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출할 수 없음. ● 유입식 변압기 ●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221000	계기용 변압기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출할 수 없음. ● 유입식 변압기 ●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229010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출할 수 없음. ● 유입식 변압기 ●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229020	용량이 1,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출할 수 없음. ● 유입식 변압기 ●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229030	용량이 5,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출할 수 없음. ● 유입식 변압기 ●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230000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출할 수 없음. ● 유입식 변압기 ●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409099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출할 수 없음. ● 유입식 콘덴서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15802000	전자빔용기기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852990	기타	1.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8535301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출할 수 없음. ● 유입식 개폐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35302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출할 수 없음. ● 유입식 개폐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35303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출할 수 없음. ● 유입식 개폐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35909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출할 수 없음. ● 유입식 차단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3932	수온램프나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램프	1.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853939	기타	1.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853941	아크램프	1.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853949	기타	1.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8543100000	입자가속기	1. 다음의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① 사이크로트론(Cyclotron) ② 신크로트론(Synclotron) ③ 신크로 사이크로트론(Synclocylotron) ④ 선형 가속장치(Linear Accelerator) ⑤ 반데그라프형 가속장치(Van de graff Accelerator) ⑥ 콕크로프트 왈톤형 가속장치(Cockrofter Walton Accelertor) ⑦ 베타트론(Betatron) ⑧ 변압기형 가속장치 ⑨ 마이크로트론 가속장치 ⑩ 가속이온주입기 ⑪ 방사광가속기 ⑫ 기타 하전입자를 가속하여 방사선을 방출하는 장치	원자력안전법
	854370	그밖의 기기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460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85491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②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11	연산 축전지 웨이스트,스크랩,수명이 끝난 연산 축전지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③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12	일차전지,축전지 웨이스트,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축전지(납,카드뮴,수은 함유한 것)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③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13	일차전지,축전지 웨이스트,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축전지(화학적 유형에 따라 선별된 것)(납,카드뮴,수은 함유 안한 것)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③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14	일차전지,축전지 웨이스트,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축전지(선별되지 않은 것)(납,카드뮴,수은 함유 안한 것)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③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1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③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21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③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2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③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29	기타	2.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31	전기전자 조립품,인쇄회로기판 웨이스트,스크랩(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3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91	기타 전기전자 웨이스트,스크랩(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99	기타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7012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0130	무한궤도식 트랙터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019	기타(엔진동력에 의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02	10인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032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0390	기타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①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건설기계관리법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042	기타[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043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0490	기타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을 제외한다)(예:구난차·기중기차·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0510	기중기차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①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②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③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④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콘크리트 혼합장치를 가진 비자주식인 것 ⑤ 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7054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①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②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③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④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콘크리트 혼합장치를 가진 비자주식인 것 ⑤ 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70590	기타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①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②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③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④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콘크리트 혼합장치를 가진 비자주식인 것 ⑤ 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7091	차량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1.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161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의 것으로서 주거 및 캠핑용의 것)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1620	농업용의 자동적재식 또는 자동 양하식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163	화물수송용의 기타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1640	기타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1680	기타의 차량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80211	헬리콥터(중량 2,000kg 이하)	1.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880212	헬리콥터(중량 2,000kg 초과)	1.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880220	비행기와 그밖의 항공기(2,000kg 이하)	1.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880230	비행기와 그밖의 항공기(2,000kg 초과)	1.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880240	비행기와 그밖의 항공기(15,000kg 초과)	1.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880510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그 부분품	1.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88052	지상비행 훈련장치 및 부분품	1.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880521	모의공중전장치와 그부분품	1.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880730	비행기·헬리콥터·무인기의 그 밖의 부분품	1.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890510	준설선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①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② 자갈채취기 : 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건설기계관리법
	890610	군함	1.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01290	부분품과 부속품	1.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901310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권총·소총·기관총·포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되는 조준경 : 경찰청장 ● 공기총·엽총등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조준경 : 시도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1.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2130000	기타(치과용의 것)	1.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214	기타(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1.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219	기타 용도의 것	1.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① 엑스선형광분석기기 ② 엑스선재료배합분석기기 ③ 엑스선금형계측기기 ④ 엑스선귀금속 각도 측정기기 ⑤ 엑스선라디오그래픽기기 ⑥ 엑스선물체감식기기 ⑦ 엑스선품질검사기기 ⑧ 엑스선조사장치 ⑨ 엑스선회절분석기기 ⑩ 엑스선수화물검색기 ⑪ 엑스선두께측정기 ⑫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엑스선을 이용한 측정 또는 분석기 등	원자력안전법
	902219	기타 용도의 것	2.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90222110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다음의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① 선형가속치료장치 ② 코발트 치료기 ③ 암치료기 및 기타 치료용 기기 등	원자력안전법
	9022212000	수의과용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229	기타 용도의 것	1.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① 방사선 추적자 이용의 것 가. 공업용의 유속, 누수,유량, 하수구 이동등 추적자 조사기기 나. 기계마모 추적자측정기기 다. 윤활유 순환 추적자 조사기기 라. 용광로 감손량 추적자 측정기기 마. 공정해석 추적자 분석기기 바. 분석, 반응, 구조결정, 추적자 시험기기 사. 생체기능 시험용기기 아. 생화학연구 시험용기기 자. 유전자공학 연구용기기 차. 시비법 시험기기 ② 이온발생용의 것 가. 연기감지기(Smoke Detector) 나. 형광등 글로우 방전관(Glow Discharge Tube in Fluorescence) 다. 표시용 방전관(Indicating Discharge Tube) 라. 진공계(Vacuum Gauge) 마.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바. 전리방사선유도(피뢰침) 장치(Lightning Radiation Lightning) ③ 계측제어용의 것 가. 두께계(Thickness Guage) 나. 레벨계(Level Gauge) 다. 밀도계(Density Gauge) 라. 농도계(Concentration Gauge) 마. 설량계(Snow Gauge) 바. 지하검측계(Slab Position Detector) 사. 중성자 수분계(Neutron Moisture Gauge) 아. 유황분석계(Sulfur Meter) 자. 정전제거장치(Static Eliminator) 차. 방사선릴레이(Radiation Relay)	원자력안전법
	902229	기타 용도의 것	2.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9022300000	엑스선관	1. 방사선발생장치의 주요부분품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29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1. 방사선발생장치의 주요부분품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61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1.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620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1.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6202000	액체형 압력계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6203000	금속형 압력계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6204000	전기식 압력계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680	기타의 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6801000	열측정계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6802000	풍력계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6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1.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71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1.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1.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수출요령 9022.29품목의 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및 이에 내장하여 사용하는 전자포획검출기(ECD)	원자력안전법
	902750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90278	그 밖의 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78	그 밖의 기기	2.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9027891000	그 밖의 물리분석용·화학분석용 기기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810	기체용 계기	1.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820	액체용 계기	1.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830	전기용 계기	1.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1.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301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1.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903090	부분품과 부속품	1.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3090	부분품과 부속품	2.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903180	기타의 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30110	포병무기(예 : 평사포 · 곡사포 및 박격포)	1.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2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 및 그와 유사한 발사장치	1.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90	기타	1.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200	리볼버와 피스톨(제9303호또는 제9304호의 것을 제외한다)	1.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200	리볼버와 피스톨(제9303호또는 제9304호의 것을 제외한다)	2.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10	총구장전화기	1.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군용 이외의 것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10	총구장전화기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10	총구장전화기	1.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320	기타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1.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군용 이외의 것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20	기타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20	기타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1.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330	기타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라이플	1.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군용 이외의 것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30	기타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라이플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30	기타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라이플	1.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390	기타	1.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군용 이외의 것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90	기타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90	기타	1.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400	기타의 무기(예: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제9307호의 것을 제외한다)	1.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400	기타의 무기(예: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제9307호의 것을 제외한다)	1.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10	리볼버 또는 피스톨의 것	1.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10	리볼버 또는 피스톨의 것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10	리볼버 또는 피스톨의 것	1.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20	산탄총과 라이플의 것(제9303호의 것에 한한다)	1.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20	산탄총과 라이플의 것(제9303호의 것에 한한다)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20	산탄총과 라이플의 것(제9303호의 것에 한한다)	1.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91	제9301호의 군용화기의 것	1.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91	제9301호의 군용화기의 것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99	기타	1.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99	기타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99	기타	1.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621	탄약	1.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621	탄약	2. 기타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629	기타	1.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629	기타	2. 기타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630	기타의 탄약과 그 부분품	1.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630	기타의 탄약과 그 부분품	2. 기타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690	기타	1.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690	기타	2. 기타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700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1. 다음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있음.(단,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장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② 검(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③ 창(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④ 치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⑤ 비수(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⑥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인 것) ⑦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치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⑧ 월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⑨ 단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⑩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930700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출할 수 없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50490	기타의 용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석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50699	기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석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601	가공한 아이보리·뼈·귀갑·뿔·가지진 뿔·산호·자개·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1	가공한 아이보리·뼈·귀갑·뿔·가지진 뿔·산호·자개·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1	가공한 아이보리·뼈·귀갑·뿔·가지진 뿔·산호·자개·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190	기타	1.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603	비·부러쉬(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부러쉬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모프와 깃먼지털이, 비와 부러쉬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로울러 및 스퀴지(로울러스퀴지를 제외한다)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3	비·부러쉬(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부러쉬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모프와 깃먼지털이, 비와 부러쉬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로울러 및 스퀴지(로울러스퀴지를 제외한다)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121	회화・데생과 파스텔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121	회화・데생과 파스텔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19	기타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19	기타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2	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2	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3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3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5	수집품과 표본[고고학・민족학・사학・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고생물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5	수집품과 표본[고고학・민족학・사학・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고생물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5	수집품과 표본[고고학・민족학・사학・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고생물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705	수집품과 표본[고고학・민족학・사학・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고생물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5	수집품과 표본[고고학・민족학・사학・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고생물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